

II. 이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이용대상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1.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일상생활 수행능력 지장이 있는 자(장기요양보험대상자)
 -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한 심신의 장애가 있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자.
2. 모집방법은 시군구 추천 및 홍보와 지역 신문 방송을 통해서 모집한다.

제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대상 : 장기요양대상자로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방문요양)자를 우선으로 하여 하루 일정시간 동안 급여성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계약목적 : 지역사회회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연계와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계약기간 :
 -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사례회의 과정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4. 계약의 해지 :
 -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만 사망시 혹은 응급 사항은 예외로 한다.
 - 본인부담금은 6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시설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는 해지하고, 시설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계를 할 수 있다.

제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급여성서비스의 원칙 :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성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료: 장기요양인정 등급표는 아래와 같다.

-참고-

- 가. 급여 월 한도액은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나. 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동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다. 월 중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라.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 마. 수급자의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 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3. 급여종류별 이용료

1. 방문요양(방문당) :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서 산정한다.

-참고-

- 가.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 나.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

여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다.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방문목욕(방문당)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이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참고-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80%를 산정한다.

가. 차량 이용 방문 목욕(나-1, 나-2)

- ①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 ② 방문목욕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 ③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나-1”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④ 욕조 펌프 스프링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나.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방문목욕(나-3)

- 1)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 2) 관련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3)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이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보유 등)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5)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다.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2025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4년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25년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인상률	11.43%	11.44%	2.05%	2.15%	2.21%	2.13%

〈2025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③ 주야간보호

(단위 : 원)

등급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1	39,810	5,972	40,650	6,098
	2	36,850	5,528	37,630	5,645
	3	34,020	5,103	34,740	5,211
	4	32,470	4,871	33,160	4,974
	5	30,920	4,638	31,580	4,737
	인지지원	30,920	4,638	31,580	4,737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	53,360	8,004	54,490	8,174
	2	49,420	7,413	50,470	7,571
	3	45,620	6,843	46,590	6,989
	4	44,070	6,611	45,000	6,750
	5	42,500	6,375	43,400	6,510
	인지지원	42,500	6,375	43,400	6,51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	66,360	9,954	67,770	10,166
	2	61,480	9,222	62,780	9,417
	3	56,760	8,514	57,960	8,694
	4	55,210	8,282	56,380	8,457
	5	53,640	8,046	54,780	8,217
	인지지원	53,640	8,046	54,780	8,217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1	73,110	10,967	74,660	11,199
	2	67,720	10,158	69,160	10,374
	3	62,570	9,386	63,900	9,585
	4	61,000	9,150	62,290	9,344
	5	59,450	8,918	60,710	9,107
	인지지원	53,640	8,046	54,780	8,217

④ 단기보호

(단위 : 원)

등급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1	70,500	10,575	71,970	10,796
2	65,280	9,792	66,640	9,996
3	60,310	9,047	61,560	9,234
4	58,720	8,808	59,940	8,991
5	57,110	8,567	58,300	8,745

⑤ 방문요양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30분	16,630	2,495	16,940	2,541
60분	24,120	3,618	24,580	3,687
90분	32,510	4,877	33,120	4,968
120분	41,380	6,207	42,160	6,324
150분	48,250	7,238	49,160	7,374
180분	54,320	8,148	55,350	8,303
210분	60,530	9,080	61,670	9,251
240분	66,770	10,016	68,030	10,205

⑥ 방문목욕

(단위 : 원)

구분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84,670	12,701	86,480	12,972
차량이용(가정 내)	76,340	11,451	77,970	11,696
차량 미 이용	47,670	7,151	48,690	7,304

청구항목	금액	비고
① 식사재료비	점심 : 3,000 원 저녁 : 3,000 원	(1식) 기준 / 식사 기록건만 청구
② 이,미용비		(1개월) 기준으로 계산
③ 간식비	1,600 원	((1일2회) 제공 시
④ 기타비	수급자 별로 계산	
등급외	수급자마다 등급외 별도 설정	
식사재료비 월한도액		월한도액(식사재료비 + 간식비)

-참조은재활주간보호센터-